

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

대통령령 제12. 213호

調査部

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조 제 1 항중 “제품검사를 하여야 하는 제품”은 다음과 “인삼제품과”를 삽입한다.

제 7조 제 1 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동호에 척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더. 영양등식품제조업 : 유아·병약자·노약자 및 임산부 등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성분을 가감하여 만든 일반영양식품이나 식품원료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추출·농축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만든 특수식품을 제조하는 영업
체. 인삼제품제조·가공업 : 인삼을 원료로 한 제품(인삼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홍삼류 및 백삼류를 제외한다)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

제 9조 제 1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영업을 제외한다.

제10조 제 1 호 중 “영양등식품제조업,”을 “영양등식품제조업·체목의 인삼제품제조·가공업으로,” 한다.

제14조중 “도시락제조업,”을 “도시락제조업, 척목의 인삼제품제조·가공업,”으로 한다.

제15조 본문중 “도시락제조업”을 “도시락제조업, 척목의 인삼제품제조·가공업”으로 하고, 동조 제 1 호중 “유가공품제조업 또는 식육제품제조업”을 “유가공품제조업·식육제품제조업 또는 인삼제품제조·가공업”으로 하며, 동조 제 2 호 단서중 “시장법”을 “도·소매업진흥법”으로, “임가공영업,”을 “임가공영업·기타

가공업(산양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·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6조 제 1 호 단서중 “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.”를 “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, 인삼제품제조·가공업에 있어서 의 식품위생관리인은 대학에서 식품가공학·식품공학·식품화학·농화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제조가공기사·영양사·품질관리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의 제조업 및 품목허가(조건부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은 자는 병 제22조 및 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,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은 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 3 조(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인삼제품제조·가공업자가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관리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.
② 이 영 시행 당시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영업자가 2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

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3년이상 식품제조·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1986년 11월 11일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6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것으로 본다.

제 4 조(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백삼제품제조업자의 동업자조합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동업자조합으로 본다. 다만,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·서울특별시장·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食品衛生法 施行令 改正理由

人蔘事業法의 適用을 받던 白蔘製品이 人蔘事業法 施行令의 改正으로 그중 糖蔘을 제외하고는 그 適用對象에서 제외되고, 食品衛生法의 適用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食品衛生法의 適用을 받게 되는 人蔘製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◇ 主要骨子

가. 종전의 人蔘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製品

檢査를 받던 糖蔘을 제외한 白蔘製品이 食品衛生法의 適用을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人蔘製品에 대하여 食品衛生法의 規定에 의한 製品檢査를 받도록 함(令第3條 第1項).

- 나. 食品衛生法의 規定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營業을 하여야 할 食品製造·加工業의 종류에 人蔘을 원료로한 製品을 製造·加工하는 人蔘製品製造·加工業을 追加함(令第7條 第1號 치록).
- 다. 人蔘製品製造·加工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法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의 營業許可 및 品目製造許可를 받도록 학(令第10條 第1號).
- 라. 營業등 食品製造業의 범위에 幼兒·病弱者 등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食用原料에 營養成分을 가감하여 만든 一般營養食品을 製造하는 營業의 食用原料에 들어 있는 特定成分을 추출 농축하여 만든 特殊食品을 製造하는 營業을 추가함(令第7條 第1號).

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 개정

보건사회부 고시 제87-56호

식품위생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87. 8. 28

보 건 사 회 부 장 관

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중 제 7을 제 6으로, 제 9를 제 7로, 제 9의 1을 제 8로, 제 10을 제 9로, 제 11을 제 10으로, 제 12를 제 11로 하며, 제 3. 식품일반에 대한 규격 및 기준 5. 이물증 “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(광성을 이물에 있어서는 0.03% 이하)”를 “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”로 하며, 6. 타알색소를 함유하여서는 아니되는 식품중 “(8) 천연식품(식육, 어패류, 과실 등)”을 “(8) 천연식품(식육, 어패류, 야채류, 과실 및 그 단순가공품(탈피, 절단 등))”으로; 24. 후추가루중 “후추가루라 함은 후추과에 속하는 후추의 익기전의 열매를 말려 가루로 한 것을 말한다”를 “후추가루라 함은 후추과에 속하는 후추(piper nigrum L.)의 익기전의 열매를 가공한 후후추(Black pepper)가루와 익은 열매를 가공한 백후추(White pepper)가루를 말한다”로 한다.

제 5. 기구·용기 및 포장의 규격기준 및 원재료의 규격 1. 규격 및 기준 중 라의 “위생관(이중권체로 된 것을 말한다)”을 “위생판”으로 한다.

부

칙

이 고시는 1987. 9. 25부터 시행한다.